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1085호 2015. 5. 7.(목)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64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고시 ----- 1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588호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석남체육공원) 결정을 위한 주민 공람 공고 ---- 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624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5 - 64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 업 명 : 금곡동 728-6번지 외 29필지 공동주택(아파트) 신축
2. 사업주체 : 하이플러스카드(주)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728-6번지 외 29필지
 - 나. 대지면적 : 30,718.3m²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82,607.3386m²(지하 1층, 지상 15층)
 - 라. 용 도 : 공동주택 8개동(아파트 55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7개동
 - 마. 사 업 비 : 164,769,750천원
4. 사업기간 : 2012. 06. ~ 2017. 06.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등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588호

인천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석남체육공원】

결정을 위한 주민 공람 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석남체육공원)결정 입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15. 5. 1.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1.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 조서

공 원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석남체육 공원	체육공원	서구 석남동 산6-8번지 일원	10,200	2014.0.07 (인고 제2014-146호)	

2.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결정(안) 도서 : 게재 생략

(시설결정 조서 및 관계도면 등 게재 생략된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

3.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 : 서구청 공원녹지과 (☎560-4492)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 - 624호

인천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5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통합방위와 관련한 유관기관의 명칭을 현행화 하고, 통합방위협의회의 정원을 확대 조정하고 시도 조례로 규정할 조항은 삭제하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기능에 대한 세부규정을 신설하여 유사시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며, 조문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통합방위협의회의 정원을 협의회 활성화 및 현실화 하기 위하여 확대 조정(안 3조)
- 통합방위와 관련한 유관기관의 명칭을 현행화 하고, 통합방위법시행령 제8조 개정에 따른 구성위원 추가하고, 위원 임기 및 해촉에 대한 사항 규정(안 3조)

-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기능에 대한 세부규정을 신설하여 유사시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6조, 7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총무과, 전화 032-560-4092, 팩스 032-560-27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 및 인천광역시서구통합방위지원본부”를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지원본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10인 이상 35인”을 “10명 이상 50명”으로,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장
2.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3. 인천광역시 서부경찰서장
4. 보병 제507여단 1대대장
5. 국군 기무부대 서구담당관
6. 국가정보원 인천지부 서구담당관
7. 인천광역시 서부소방서장
8. KT 서인천지점 지점장
9. 인천보훈지청장
10.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제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할 때
2. 장기치료가 필요할 질병 등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또는 활동부진 등으로 협의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 중 “분기1회”를 “분기 1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무담당간사 : 총무과장
2. 민방위담당간사 : 안전총괄실장
3. 심리전담당간사 : 홍보미디어과장
4. 작전담당간사 : 보병 제507여단 1대대 작전장교, 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5. 정보담당간사 : 서부경찰서 정보보안과장
6. 예비군담당간사 : 보병 제507여단 1대대 동원장교
7. 소방담당간사 : 서부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제5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서구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를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소속하에 인천광역시서구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를 “소속 하에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기획감사실장”을 “총무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청내”를 “인천광역시 서구청 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지원본부의 구성 및 각 분야별 지원반의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제1항 중 “방위협의회지원본부(이하”를 “방위협의회 지원본부(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동 지원본부의 구성 및 각 분야별 지원반의 임무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를 삭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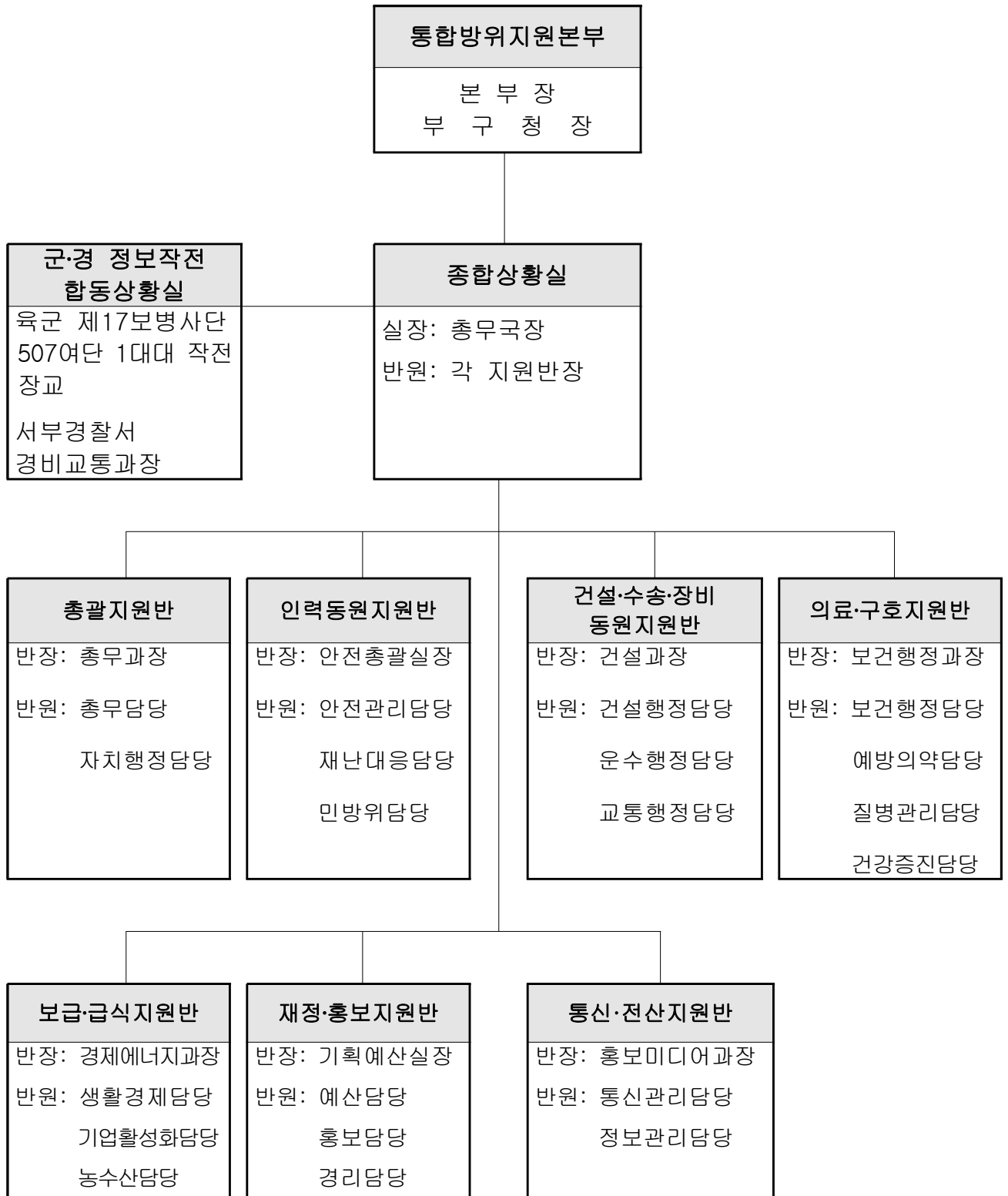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구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체계도(제6조 관련)



각 분야별 지원반의 임무(제6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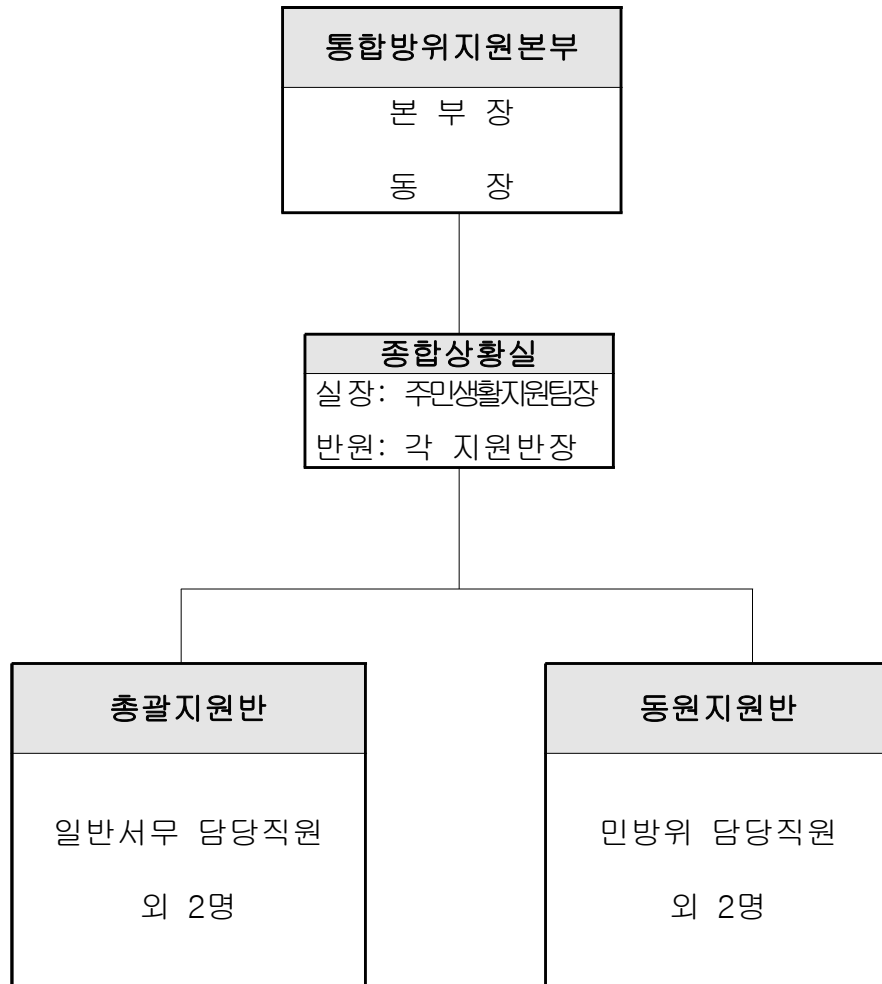
구 분	임 무
본 부 장 (부 구 청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 감독 •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대표하고, 사무 관장 및 지휘·감독 • 통합방위지원본부 편성요원 임명 및 위촉 • 소속 행정기관의 통합방위지원본부 지휘·감독 • 각 분야별 지원반의 업무 협조 및 조정·통제 • 상하 인접지원 부서 간 지휘 및 협조체제 유지 • 군·경 정보작전합동상황실과의 협조체제 유지 및 긴급상황 발생시 즉각 지원태세 유지 • 각 분야별 주요지원 및 조치사항 종합
종합상황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상황 파악 유지 및 각 분야별 지원반 활동 조정·통제 • 신속 정확한 경보전파 • 작전부대와 협조 지원요소 파악 및 지원 지시 • 통합작전에 관한 지원대책 수립·시행 및 필요시 통합방위협의회에 건의 • 소속 행정기관의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 지휘·감독 • 통합방위작전 지원계획 조정·통제 • 군·경 작전상황을 파악 통합방위지원본부에 전파 • 통합방위지원본부 지원상황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 통보 • 총무 3중사태 이후 각 정부 부처의 현황 및 기능 유지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정보업무 관장 • 신속 정확한 경보발령 및 전파 • 종합상황실에 정보 및 첩보 제공 • 군·경 작전상황 종합 분석·판단 건의 및 조치 • 군 및 경찰작전상황 종합상황실(장)에게 통보 및 협조
총괄지원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장 •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되는 각종 회의 관장

구 분	임 무
인력동원지원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지원 및 병력동원업무 계획 수립·시행, 지원업무 관장 • 예비군, 민방위대의 비상연락망 유지 및 조정 • 실비 변상 및 가료, 구호소요 제기 • 국가동원계획의 인력 및 병력동원 집행 준비 및 지원 • 가용인력 및 병력현황 파악 유지 • 주민통제 업무 관장
건설·수송·장비동원 지원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건설 및 수송지원계획 수립 및 통합작전 지원차량 소요판단 확보 등 지원업무 관장 • 건설복구 및 수송지원조 편성·운영 • 실비변상 및 회수·반환업무 관장 • 국가동원 계획의 건설 및 수송동원 사항에 대한 집행준비 및 지원 • 민방위 지원대와 연계한 기술인력 확보 및 피해복구 관장 • 차량통제
의료·구호지원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구호 및 후송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업무 관장 • 의료·구호조 편성·운영, 의료시설 및 요원 지정·통제 • 급수 및 방역업무 시행 • 국가동원 계획의 의료동원 집행준비 및 지원 •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 작전동원된 예비군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한 경우 진료비 지원
보급·급식지원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급 및 급식 지원계획 수립·시행, 작전 동원 병력 급식 및 보급 지원업무 관장 • 보급 및 급식장비 획득 지원 • 국가동원 계획의 공산품 및 농수산물 동원 집행 준비

구 분	임 무
재정·홍보지원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지원 계획 수립·시행 •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예산 결산 • 국가동원 계획의 재정동원 집행 준비 • 홍보 및 계몽계획 수립·시행 • 홍보매개체 조정·통제 및 홍보(계몽)반 편성 및 운영 • 국가동원 계획의 홍보매체 동원집행 준비 • 군사작전 홍보지원계획 수립·시행
통신·전산지원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지원 계획 수립 시행 및 지원업무 관장 • 통합방위지원본부 통신망 구성 및 운영 • 종합 통신 운영계획 수립·시행 및 감독 • 통신지원조 편성·운영 및 통신시설 가설 복구 • 국가동원 계획의 통신지원 집행 준비 및 지원

[별표 2]

동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체계도(제7조 관련)



- 주) 1. 미 편성된 지원반의 임무·기능은 총괄지원반에서 수행
2. 전시 정부기능 업무(주민통제, 배급, 민방위대 통제 등) 병행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인천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 및 인천광역시서구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u>인천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한다.</u></p> <p>1. ~ 6. (생략)</p> <p>제3조(협의회 구성) ① <u>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35인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며, 의장이 사고</u></p>	<p><u>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u>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지원본부</u>-----</p> <p>-----</p> <p>-----</p> <p>-----</p> <p>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u>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p> <p>1. ~ 6. (현행과 같음)</p> <p>제3조(협의회 구성) ① -----</p> <p>-----<u>1명</u>-----</p> <p>-----<u>10명 이상 50명</u>-----</p> <p>-----</p> <p>-----<u>위원 중</u>-----</p> <p>-----</p>

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 1.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장
- 2.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청 교육장
- 3. 인천광역시 서부경찰서장
- 4. 보병 제103여단 3대대장
- 5. 국군601기무부대 서구담당관
- 6. 국가정보원 인천지부 서구담당관
- 7. 인천광역시 서부소방서장
- 8. KT 서인천지점 지점장

<신 설>

9. 기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신 설>

<신 설>

-----.

②-----
-----사람으로-----.

-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 2.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 3. 인천광역시 서부경찰서장
- 4. 보병 제507여단 1대대장
- 5. 국군 기무부대 서구담당관
- 6. 국가정보원 인천지부 서구담당관
- 7. 인천광역시 서부 소방서장
- 8. KT 서인천지점 지점장
- 9. 인천보훈지청장

10. 기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1. 스스로 사임할 때
- 2. 장기치료가 필요할 질병 등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제4조(협회의의 운영) ① 협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생략)

③협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고,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1. 총무·심리전담담당간사 : 총무과장
- 2. 민방위담당간사 : 민원봉사과장
- 3. 작전담당간사 : 보병 제103여단 3대대 작전장교, 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 4. 정보담당간사 : 서부경찰서 정보보안과장
- 5. 예비군담당간사 : 보병 제103

때

3. 품위손상 또는 활동부진 등으로 협회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협회의의 운영) ① -----

-----분기
1회-----

-----.

② (현행과 같음)

③-----
-----각 호-----

-----.

- 1.총무담당간사 : 총무과장
- 2.민방위담당간사 : 안전총괄실장
- 3. 심리전담담당간사 : 홍보미디어과장
- 4. 작전담당간사 : 보병 제507여단 1대대 작전장교, 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 5. 정보담당간사 : 서부경찰서

여단 3대대 동원장교

제5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
하여 협의회에 인천광역시서구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
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
무를 담당한다.

1. ~ 3. (생략)

③ (생략)

제6조(지원본부) ① 구청장 소속
하에 인천광역시서구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
다)를 둔다.

②지원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무
를 분장한다.

1. ~ 8. (생략)

③ (생략)

④지원본부에 두는 상황실의 상
황실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또한 분야별 지원반

정보보안과장

6. 예비군담당간사 : 보병 제507

여단 1대대 동원장교

7. 소방담당간사 : 서부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제5조(실무위원회) ① -----

-----인천광역시 서
구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

②-----각 호-----
-----.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본부) ① -----소속
하에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

②-----각 호-----
-----.

1. ~ 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총무국장-----

-----.

은 총괄, 인력동원, 건설·수송, 의료·구호, 통신, 보급, 홍보 및 재정분야로 구성한다.

⑤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지원본부는 인천광역시서구청내에 둔다.

⑥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7조(동 지원본부) ① 각 동 소속 하에 동 방위협의회지원본부(이하 “동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 ⑤ (생략)

⑥동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8조(취약지역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
 -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

⑤-----
-----인천광역시 서구청 내-----.

⑥지원본부의 구성 및 각 분야별 지원반의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동 지원본부) ① -----
-----방위협의회 지원본부(이하-----.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동 지원본부의 구성 및 각 분야별 지원반의 임무는 별표 2와 같다.

<삭 제>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 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활동·봉사활동의 실시

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

의 1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연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병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한한다)

라.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관계법령 발췌

□ 통합방위법 제5조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도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 시·도 협의회와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도 협의회에 한한다.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중사태 및 병중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④ 지역협의회외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통합방위법 제9조

제9조(통합방위 지원본부) ①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읍장·면장·동장 소속으로 시·군·구·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

② 시·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군·구·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라 한다)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5. 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통합방위법 제17조

제17조(대피명령)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이하 "대피명령"이라 한다)은 방송·확성기·벽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안전대피방법과 대피명령의 실시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1.]

□ 통합방위법 제22조

제22조(취약지역의 선정 및 관리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분석하여 시·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지역으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하거나 해제한 결과를 통합방위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교통·통신시설이 낙후되어 즉각적인 통합방위작전이 어려운 오지(奧地) 또는 벽지(僻地)
2. 간첩이나 무장공비가 침투한 사실이 있거나 이들이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
3. 적이 저공(低空) 침투하거나 저속 항공기가 착륙하기 쉬운 탁 트인 곳 또는 호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방위본부장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거나 국가적인 통합방위 대비책이 필요한 지역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지역으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하거나 해제한 결과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취약지역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취약지역의 통합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지역군사령관은 취약지역 중 방호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안 또는 강안(江岸)에 철책 등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시·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해당 지역 국군 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지청장 또는 검사
5.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9. 지방병무관서의 장
10. 교육감 또는 교육장
11. 지방의회 의장
12. 지방소방관서의 장
13. 지역 재향군인회장
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